

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-공공협력사업 민간-공공협력병원 모집 공고

「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-공공협력사업을 수행할 유능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07일

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

1. 사업과제

- 과 제 명 : 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-공공협력(PPM1)사업
- 주요내용 :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(퇴원 및 외래환자) 사후관리 및 지역사회연계
- 사업기간 : 3년 ('25. 1월~ '27. 12월)
- 25년 예산액 : 총 540,000천원(개소당 약 108,000천원)
 - ※ 배치인력(정신건강전문요원)의 인원에 따라 예산 배정 다를 수 있음(1명 또는 2명)
 - ※ 2025년 예산확정에 따라 변경가능

2. 사업내용

- 사 업 량 : 5개소 이하(도 내 정신의료기관)
- 사업목적 : 정신의료기관 퇴원 및 외래환자의 치료 임의중단 방지 및 치료 유지율 향상
- 사업내용
(정신의료기관의 퇴원 및 외래환자 사후관리)
 - 증상 관리를 위한 외래 내원 관리 및 복약지도
 - 치료 동기 강화를 위한 상담 및 교육
 -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
 - ※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 관리, 회계·행정 관리 포함

1) PPM(Private-Public Mix) : 민간-공공 협력

○ 지원사항 :

- 민간공공협력병원(정신의료기관)에 배치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인건비 및 사업비(정신의료기관 당 1~2명 배치)
 - ※ 기존 「정신질환자 민간-공공협력(PPM)」 병원의 우선 선정 고려. 단, 전담인력의 고용승계 필수
 - ※ 인건비는 「정신건강 사업안내」 (보건복지부) 기준을 따름
 - ※ 매년 평가 실시하여 계약조건 미달시 협약체결 취소될 수 있음

○ 사업주체별 역할

경기도	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체계 계획 수립 • 예산편성 및 교부 • 사업 활성화 협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안내(운영매뉴얼) 제작·배포 • 운영·예산집행지원 및 지도점검 • 추진실적·성과 관리 • 전담인력 교육 및 운영간담회 • 사업 홍보
시·군 /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	PPM 의료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 협력(의뢰·연계) •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•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퇴원 및 외래환자 사후관리, 지역사회 연계 • 외래환자 치료 동기 강화 상담 및 교육 • 사업실적·성과 보고 • 전담인력 채용 관리 • 보조금 집행 및 회계 관리 등

3. 신청자격 및 조건

-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에 따라 개설·운영 중인 도내 정신의료기관 중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

4. 지원조건

- ‘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’ 및 ‘경기도 정신질환 통합서비스 민간·공공 협력사업’ 사업안내(매뉴얼) 준수
-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되는 금액으로 함
-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·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

5. 기관 선정방법 및 통지

- 선정방법 : 전문가, 학계 등으로 「선정심의위원회」를 구성·운영하여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
 -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 : 최종 득점점수에 따라 일부 선정
 - 신청기관이 5개소 미만 : 2차 공고 실시
 - 신청기관이 예산(배치인력) 규모를 지정하였다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성과목표나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예산(배치인력)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
- 심사선정 : 심사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
 -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 최종 선정
 - 심사 후 선정기준 미달 등으로 최종 적격자가 5개 이하로 확정될 수 있음
 - 적격자 확정 후 잔여예산 있을 시 추후 공고 및 선정가능
- 선정기준
 - 심사결과 70점 이상인자
 - 기관선정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최종 선정하고, 동일한 점수를 획득한 경우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
 - ※ 평가항목 : 민간·공공협력 시범사업 참여(25점),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적절성(25점), 성과지표의 적절성(25점),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(15점),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(10점)
- 선정발표 : **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,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및 개별통보**
- 선정된 기관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실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※ 단, 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지원예산을 준수하여 작성

6. 보조금 지급 및 정산

-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
- 회기년도(1년) 마감 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

7. 기타

-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
-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경기도 또는 경기도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
 - 중간실적보고서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
-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름

8. 신청서 교부 및 접수

- 가. 신청서 서식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참조
 -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(<https://www.mentalhealth.or.kr>)
 - 경기도청 (<https://www.gg.go.kr/>)
- 나. 접수기간 : '24.10.07.(월) ~ '24.10.21.(월) 18:00까지
- 다. 접수장소 :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연계팀
(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별관 2층)
- 라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택배접수

9. 제출서류

- 가. 사업신청서
- 나.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1부
- 다. 서약서(소정양식) 1부
 - ※ 상기서류(가,나,다)는 1권(쪽번호 명시)으로 편철하여 원본포함 10권 제출
- 라. 제출공문 1부
- 마. 상기서류(가,나,다,라)를 수록한 USB(또는 CD) 1부

10. 유의사항

- 가.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나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.
- 다.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- 라. 신청기관은 관련법규 및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.
- 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연계팀 황선이[031-212-0435(내선 6077)]로 문의